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법률 제19157호, 2023.1.3. 일부개정, 2024.1.4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변경된 지표 명칭(화재위험유발지수→화재안전등급)을 반영하고,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·미작성·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“화재위험유발지수”에서 “화재안전등급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평가 항목*을 평가점수로 단일화 (안 제2조제8호, 안 제11조제2항, 안 별표4)

* (현행)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화재안전등급 산정 → (개정) 평가점수로 산정

나.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등급(A등급 및 D·E등급)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(안 제11조제1항, 안 제13조)

다. 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“특별자치시장” 추가 (안 제4조제3항)라. “소방특별조사”를 “화재안전조사”로 변경 (안 제18조의2제2항·제3항)

마.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·미작성·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함 (안 별표6)

※ (1회 위반) 100만원 → (2회 위반) 200만원 → (3회 위반) 300만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별표 4”를 “별표 7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“위험유발지수가”를 “화재안전등급이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화재위험유발지수)”를 “(화재안전등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상”을 “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험유발지수”를 “화재안전등급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법 제15조제4항”을 “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”으로, “미만”을 “이상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법 제15조제5항”을 “법 제15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“(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”을 “(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소방특별조사”를 각각 “화재안전조사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자.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 제6호	100	200	300
1)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				
2)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			
3)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				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4]

화재안전등급(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)

등급	평가점수
A	80 이상
B	60 이상 79 이하
C	40 이상 59 이하
D	20 이상 39 이하
E	20 미만

비고

“평가점수”란 다중이용업소의 가연물·점화원 관리, 연소확대 위험, 소방시설의 설치, 내·외부 마감재 등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다중이용업)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营业을 말한다. 다만, 营业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营业은 제외한다.	제2조(다중이용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(이하 “학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(이하 “수용인원”이라 한다)이 300명 이상인 것	가. ----- ----- 별표 7----- ----- -----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4. ~ 7의5. (생략)	4. ~ 7의5. (현행과 같음)
8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<u>위험유발지수가</u>	8. ----- <u>화재안전등급이</u>

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.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
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·광역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.

제11조(화재위험유발지수)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”란 별표 4의 디(D) 등급 또는 이(E)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·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(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

-----.

제4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-----

----- 특별시
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-----

-----.

제11조(화재안전등급) ① -----

----- 미만-----

-----.
②----- 화재안전등급-----

-----.

제13조(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

면제) 법 제15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”란 별표 4의 에이(A)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.

제14조(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)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(이하 “평가대행자”라 한다)로 등록해야 한다.

제18조의2(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,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

면제)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
----- 이상-----

제14조(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) 법 제15조제6항-----

제18조의2(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화재안전조사 -----

③ ----- 화재안전조사

서는 안 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47